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uestion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 Answer
-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등본의 송달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0조)  
다만, 심사관의 직권심사에 의한 새로운 취소이유의 송달이 있는 후에는 이의신청의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2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는 청구항마다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Question 디자인이란 무엇이며, 디자인등록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 Answer
- 디자인은 보통 Design과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Design은 광고포스터, 그래픽 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건축디자인, 도시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나, 디자인은 Design의 개념 중 제품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의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이나 전화기의 아름다운 외형은 디자인권으로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자인을 등록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디자인은 회사의 생산품과 이미지를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록된 디자인은 무형의 금전적 가치를 가진 자산입니다.
    - 디자인등록이 되어 있으면 동종 경쟁업자에 의한 도용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의 디자인등록은 자신의 디자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첫번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디자인과 상표는 어떻게 다른가요?

- Answer
- 디자인과 상표는 그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즉,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물건 자체의 모양(외형)에 대한 권리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 한편,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제품 자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제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는 특정한 "표장"에 대한 것입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